

2013년 제3회 이사회 의사록

□ 일시 : 2013. 07. 24(수)

□ 참석 : 9명

- 이사 : 김성현 의장, 이기석이사장, 우천수상임이사, 나종한이사, 최근식이사, 문병용이사, 김상국이사, 한철희이사, 고재풍감사

□ 주요내용

의 안 내 용	개최결과
<p>□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정관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안번호 제6호 ○ 주요내용 : 임원의 비리관련 의원면직 제한 규정 의무화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background-color: #e0f0ff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 margin: 5px 0;"> 주요개정 내용 </div> <p>제14조(임직원의 신분보장)</p> <p>① 공단의 직원은------(생략)</p> <p>② 임명권자는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공단의 임원(특히,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중징계(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) 처분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)의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외의 사항은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요 개정의견 : 특이사항 없음 	<p>원안의결</p>
<p>□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안번호 제7호 ○ 주요내용 : 직원의 비리관련 의원면직 제한 규정 의무화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background-color: #e0f0ff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 margin: 5px 0;"> 주요개정 내용 </div> <p>제37조(의원면직) 직원이 퇴직코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u>이사장은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직원(특히,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중징계(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) 처분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)의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외의 사항은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요 개정의견 : 특이사항 없음 	<p>원안의결</p>